52. 자동차 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상세불명의 피부염, 상세불명의 건선,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성별	남성	나이	만 37세	직종	자동차 공장 근로자	직업관련성	낮음

1 개 요

근로자 ○○○은 2002년 10월에 □자동차 공장에 입사하여 의장부서에서 도어 조립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는 2013년 1월부터는 도어 레귤레이터 장착 업무에 근무하던 중 2014년 11월 3일부터 손 피부색이 붉게 변하고 껍질이 벗겨지는 증상으로 A피부과의원에서 진료를 수진하였으며, 만 37세가 되던 2016년 6월 2일에 B피부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피부염, 상세불명의 건선,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자동차 공장에서 도어 레귤레이터에 묻은 그리스에 손이 노출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8월 27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관련성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 ○○○은 대전-진주 간 고속도로 현장과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02년 10월 □ 자동차 공장에 입사하여 의장부서에 배치되었다. 근로자는 2013년 1월부터는 도어 레귤레이터 장착 업무에 근무하던 중 근무 시작 약 3년 5개월 만인 2016년 6월 2일에 상병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2013년 1월부터 도어 레귤레이터 조립업무를 하루 8시간 수행하였다. 작업의 약 95%를 차지하는 도어 레귤레이터 조립업무는 도어 레귤레이터를 왼손으로 들고 도어 내부에 삽입하여 장착한 후 너트 스크류로 오른손 임팩트에 너트를 끼워 완전 체결하는 업무였다. 레귤레이터의 무게는 약 5 kg이었고, 작업량은 1시간에 56.5대, 하루 평균 424대를 작업하였으며, 1대당 너트 4개를 체결하였으므로 시간당 총 226개, 하루 1696개의 너트를 체결하였다.

해부학적 분류

- 기타 질환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

5 의학적 소견

근로자 ○○○은 2014년 11월 3일부터 손 피부색이 붉게 변하고 껍질이 벗겨지는 증상으로 A 피부과의원에서 수진하였다. 만 37세가 되던 2016년 6월 2일에 B피부과의원에서 주상병 발백 선과 부상병 상세불명의 피부염을 진단받았다. 2016년에는 B피부과의원 및 C의원 등에서 발백 선, 상세불명의 피부염,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상병으로 수진하였다. 2017년에는 D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접촉피부염, 발백선 상병으로 수진하였다. 2018년에도 의원들에서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상세불명의 피부염, 발백선, 얼굴의 봉소염(cellulitis) 상병으로 수진하였다. 2019년에는 B피부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피부염, 상세불명의 건선 상병으로 수진하였다. 2020년에는 B피부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피부염, 상세불명의 건선 상병으로 수진하였다. 2021년 3월 10일까지는 B피부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피부염 상병으로 수진하였다. B피부과의원에서는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하였다. 가장 최근 날짜인 2020년 11월 30일의 의무기록에서 현재도 손에 비늘(scale)과 발의 소수포(vesicle)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치료 관련해서 연고 도포는 꾸준히 하고 있으나 증상의 호전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자는 1998년부터 흡연을 하였으며 하루 한 갑 흡연하지만 중간에 2년 금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음주는 한 달에 2-3번 소주 1병을 마셨지만 2017년부터 금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남, 1979년생)은 2014년 11월 손 피부색이 붉게 변하고 껍질이 벗겨지는 증상 시작되었고 만 37세가 되던 2016년 6월에 상세불명의 피부염, 상세불명의 건선,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진단 받았다. 근로자는 2002년 10월 □자동차 공장에 입사하여 의장부서에서 도어 조립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년 1월부터는 도어 레귤레이터 장착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 건선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물질은 없으며, 피부 부식성 및 자극성 물질은 다양하다. 근로자는 의장부서에 근무하면서 도어 레귤레이터 장착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한 그리스의 성분 중 피부 부식성, 자극성, 또는 과민성 물질로 밝혀진 물질은 없었으며, 이들 성분과 건선과의 연관성의 근거도 부족하다. 또한 상세불명의 피부염 및 알레르기성 피부염의 경우 직업성 피부질환의 진단 기준인 마티어스(Mathias)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끝.